

『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(안 제9조제3항)

- 당초 : 당연직 6명, 위촉직 13명 이내(청년 5명 이상 포함)
- 변경 : 당연직 4명, 위촉직 15명 이내(청년 7명 이상 포함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,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(불입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2. 22. ~ 3. 2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청년정책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(1기)의 임기가 5월 중 종료됨에 따라, 새롭게 모집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청년정책위원회가 14만여 명의 관내 청년(15세~39세)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